

■ 계약직원 인사세칙

현행	개정(안)	사유
제6조(상근계약직 임용) ③ 상근계약직의 정년은 <u>만 55세로</u> 하며,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	제6조(상근계약직 임용) ③ 상근계약직의 정년은 <u>만 60세로 하며</u> ,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 <u>1학기의 말일은 8월 31일, 2학기의 말일은 익년도 2월 말일로 한다.</u>	-고령자고용법 제19조 (정년) 법률 개정 [시행일:2016.1.1.] 준수를 위한 문구 반영 -학사일정 변경 시행에 따라, 학기의 말일에 대한 날짜 명확화
제13조(통상임금) <u>계약직원의 통상임금은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한다.</u>	제13조(통상임금) <u>“통상임금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바에 의한다</u>	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(통상임금) 준수를 위한 문구 반영
제15조(제수당) ① 계약직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<u>매시간당 통상임금의 184분의 1의 15할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.</u> ② 계약직원이 22:00부터 다음날 06:00까지 사이에 근무한 때에는 <u>매시간당 통상임금의 184분의 1의 5할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.</u> ③ 계약직원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<u>매시간당 통상임금의 184분의 1의 15할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.</u>	제15조(제수당) ① 계약직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<u>법정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</u> ② 계약직원이 22:00부터 다음날 06:00까지 사이에 근무한 때에는 <u>법정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.</u> ③ 계약직원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<u>법정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.</u>	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 준수를 위한 문구 반영)
제16조(퇴직) ① 계약직원이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할 경우에는 <u>적어도 15일전에 사직 의사를 소속부서장에 통보하고 직원인사부서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</u>	제16조(퇴직) ① 계약직원이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할 경우에는 <u>사직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직접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고 15일전까지 인사팀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</u>	원활한 인수인계 및 인력운영등을 고려하여 사직 신청 절차 강화